

02 TRADE INSIGHT

1. 글로벌공급망 규제 환경의 변화
 - 미국 동향 중심으로
2. EU CBAM 검증, 무엇이 준비되었고 무엇이 남았나



한-영 FTA 개선협정 원산지 규정의 주요 변화와 기업 활용 시사점

- 원산지 규정 체계와 일반 원산지 규정 -



심성훈
관세청
FTA 제도개선실 사무관

1. 들어가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한국과 영국은 양국 간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EU FTA를 기초로 한-영 FTA를 체결하였고, 협정은 2021년 1월 발효되었다. 이후 양국은 2023년 11월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2024년부터 공식협상을 진행하여 2025년 12월 개선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개선협정문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면서 원산지 분야에서는 가공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자동차, 의약품·화장품·플라스틱, 배터리 등을 대표적인 개선 품목으로 제시하였다.¹⁾

1) 산업통상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보도자료, 2025.12.16.; 산업통상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보도자료, 2026.8.31. 전자는 한-영 FTA의 발효·개선협상 경과와 2025.12.15. 타결을, 후자는 2026.9. 공개한 협정문 초안과 원산지 분야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제시한다.

현행 한-영 FTA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를 중심으로 원산지 문제를 규율하는 반면, 개선협정은 이를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로 대체하면서 원산지 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누적, 직접 운송,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이르는 규범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하였다.

협정문상의 변화폭이 크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 같이 FTA 특혜를 활용하는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화가 있는 반면, 부가가치기준과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취급(중간재), 누적, 재생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비조작 및 개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해당 기준이나 생산·공급망·물류구조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에 영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개선협정에 대비하는 때에는 공통적인 절차 변화를 반영하고, 자사의 품목과 생산·공급망·물류구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선별하여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두 차례에 걸쳐 한-영 FTA 개선협정의 원산지 규정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현행 한-영 FTA와 개선협정 간 원산지 규정 체계의 변화를 살펴본 후, 부가가치기준, 생산에 사용된 재료, 누적, 재생재료,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비조작 등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생산·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원산지 규정의 주요 변화를 검토한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화장품 및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변화와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활용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본고는 2026년 9월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개선협정문 한글본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공개 한글본은 국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정식서명본에서 문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²⁾

2. 현행 협정에서 개선협정으로: 원산지 규정 체계의 재설계

현행 한-영 FTA의 원산지 규정은 한-EU FTA에서 유래한 의정서 구조를 기초로 한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원산지 제품의 요건, 누적,

2) 산업통상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보도자료, 2026.8.31. 산업통상부는 공개본을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으로 설명하고, 국민의견 및 관계부처·전문가 검토 후 한글본을 확정하는 다음 외교부·법제처 검토와 영국 측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영역요건과 직접 운송 등을 규정하고, 이어 원산지 신고서, 인증수출자, 증빙서류, 기록유지와 검증 등 원산지 증명 및 행정협력 절차를 규율하는 방식이다.

개선협정은 이러한 구조를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로 재편한다. 제1절에서는 원산지 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 상품가격 및 재료가치, 누적, 재생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 비조작 등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절에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신청의 근거, 수입 후 신청, 기록보관, 원산지 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규정한다.³⁾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조문 재배치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HS 2022를 기초로 다시 구성되고, 부가가치기준에서는 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방법과 상품가격·재료가치 관련 규정이 도입된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당사국 내 생산 기여, 누적, 재생재료 및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된다. 다만, 변경된 제도나 용어는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다른 FTA에 다수 도입되어 있으므로 제도나 용어 자체보다는 한-영 FTA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산식과 자료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⁴⁾

운송 규율도 변경된다. 현행 협정은 EU 외 비당사국 경유 시 단일 탁송화물을 전제로 환적·일시보관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운송 요건을 두고 있으나, 개선협정은 비당사국에서의 화물의 분리가 인정되며,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거나 비당사국에 보관되는 경우 비조작으로 인정하는 작업의 범위가 확대된다.⁵⁾

절차 측면에서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근거가 다양해지는 것이 주요 변화 중 하나이다. 현행 협정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구조라면, 개선협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물론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를,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작성한

3)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현행 원산지 의정서'); 산업통상부 공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초안」,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이하 '개선협정 공개본'). 개선협정 공개본은 현행 원산지 의정서를 제2-가장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한다.

4)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4조(역내가치포함비율), 제2가.6조부터 제2가.10조까지 및 부속서 2가-가(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협정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공제법과 집적법 등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20조(비조작)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원산지 신고서도 신청의 근거로 인정한다.⁶⁾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방식도 달라진다. 개선협정상 원산지 신고서는 규정된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전자적 형식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와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부속서 2가-다의 최소 정보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⁷⁾

아래 표에서 보듯 개선협정은 원산지 판정, 가치산정, 공급망, 운송,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및 검증에 이르는 여러 영역을 함께 재구성한다. 다만 개별 품목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원재료·생산·물류구조뿐 아니라 영국의 일반관세율과 FTA 특혜관세 간 세율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규정이 어떠한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현행 한-영 FTA와 개선협정 원산지 규정의 주요 구조 변화

구분	현행 한-영 FTA	개선협정
원산지 규정 구성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MC법	RVC법으로 전환하고 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규정
생산에 사용된 재료	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반영하나 비원산지 상태의 선행 생산물에 발생한 가공가치는 별도 원산지 기여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재료의 가치와 함께 해당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가치를 RVC에 반영 가능
누적	한-영간은 재료누적만 적용, EU의 재료와 공정누적 적용 가능	재료누적은 물론 공정·부가가치까지 연결하는 완전누적 도입, 일반적인 EU 누적은 종료되나 지정 섬유품목 특례는 유지
재생재료	사용 후 물품·폐기물 등을 주로 완전생산 규정에서 취급	일정한 요건의 재생재료를 재제조 상품 생산에 사용·결합 시 원산지재료로 취급
대체가능 상품·재료	대체 가능한 원산지·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구분 회계 허용	상품과 재료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사용 허용
운송	직접 운송 원칙, EU 경유 특례 및 그 밖의 비당사국 경유 예외	비조작 규정으로 개편되며, 비당사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 확대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2007 기준, 부가가치기준은 MC법	HS 2022 기초로 PSR 재구성, 부가가치 기준은 RVC 기반으로 변경하고 공정 기준 도입, 자동차 등 PSR 완화

6)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22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1항. 개선협정은 영국 수입의 경우 수입자의 인지, 한국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양국 공통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신청 근거로 규정한다.

7)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22조제2항 및 부속서 2가-다(최소 정보 요소)

구분	현행 한-영 FTA	개선협정
특혜관세대우 신청 및 원산지 증명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 신청,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원산지 신고 시 인증수출자 지위 요구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서 외에, 영국 수입 시 수입자의 인지, 한국 수입 시 수입자 작성 원산지 신고서도 인정
기록·검증	수출자의 기록유지와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중심	신청의 근거에 따라 기록보관·정보요구· 검증경로 등 구체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 가운데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생산·공급망 운영에 직접 연결되는 부가가치기준, 생산에 사용된 재료, 누적, 재생재료,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비조작을 중심으로 일반 원산지 규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일반 원산지 규정의 주요 변화

3.1 부가가치기준의 전환: MC법에서 RVC법으로

현행 한-영 FTA의 부가가치기준은 한-EU FTA의 구조를 이어받아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으로 규정하는 MC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MC 40%는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개선협정은 부가가치기준을 현행 MC법에서 RVC법으로 전환한다. 제2가.4조는 공제법, 집적법 및 원산지재료법의 세 가지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공제법은 상품의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를 차감하여 RVC를 산정하고, 집적법은 원산지재료가치에 직접노무비·직접경비·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원산지재료법은 원산지재료가치만을 기초로 한다. 특히 개선협정에서 집적법과 원산지재료법이 별개의 방법으로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다만 세 가지 방법을 모든 품목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속서 2가-가의 개별 PSR이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과 기준비율을 정하며, 예를 들어 일부 품목은 공제법 또는 집적법으로 RVC 40% 이상, 원산지재료법으로 RVC 30% 이상을 요구한다.

8)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4조는 RVC법의 산정방법을 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RVC법으로의 전환은 산식뿐 아니라 가격과 재료가치의 산정구조도 함께 바꾼다. 제2가.6조는 상품의 가격을 최종 생산지에서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가격, 수출항 적재 시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가격 또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제2가.8조부터 제2가.10조까지는 재료가치와 그 조정방법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선협정의 부가가치기준은 PSR의 RVC 비율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산정방법과 상품·재료의 가치평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⁹⁾

3.2 생산에 사용된 재료: 원산지재료의 취급과 가공가치의 반영

현행 협정에도 선행 생산단계에서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기여를 후속 생산에 반영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현행 제5조제1항가호는 비원산지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된 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를 다시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개선협정 제2가.7조가호도 비원산지재료가 추가 생산을 거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후속 생산에서 원산지재료로 취급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기본원리는 유지된다.

차이는 원산지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중간재에 내재된 가치의 처리에서 나타난다. 현행 제5조제1항나호는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가공한 결과물이 여전히 비원산지인 경우에도, 그 결과물이 후속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3은 해당 비원산지 중간재의 공장도가격에서 그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공제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현행 협정도 비원산지 중간재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구분하여 인정한다. 다만 그 중간재가 원산지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국에서 그 중간재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가공가치까지 별도의 원산지 기여로 이월하는 구조는 아니다.¹⁰⁾

개선협정 제2가.7조나호는 RVC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가치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비원산지재료가 후속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더라도,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가 그 비원산지재료에 수행한 가공의 가치와 그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9)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6조(상품의 가격), 제2가.8조(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제2가.9조(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한 조정) 및 제2가.10조(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한 조정).

10)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5조제1항 및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주해 3(자가생산 원산지재료의 가치 산정은 주해 4 참조). 주해 3은 제5조제1항나호에 따른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해당 비원산지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그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자가생산 원산지재료 포함)의 가치를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를 원산지 포함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원산지 상태에 머문 중간재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당사국에 축적된 가공가치가 후속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연결될 수 있다.¹¹⁾

이러한 차이를 단순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당사국에서 생산된 비원산지 중간재의 공장도가격을 100으로 하고 그 가치가 기초 비원산지 투입재 40, 원산지재료 20 및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가공가치 40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예시는 최종상품의 RVC를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원산지 중간재에 내재된 가치가 후속 생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처리 비교(단순 예시)

구분	가치	현행 협정에서 처리	개선협정에서 처리
기초 비원산지 투입재	40	비원산지재료에 포함	비원산지 부분
원산지재료	20	중간재의 비원산지재료 가치 산정 시 고려 가능	RVC상 원산지 포함비율로 계산 가능
당사국 가공가치	40	별도 원산지 기여로 미공제	
산정 효과	-	후속 생산에서 고려되는 비원산지 재료 가치: 80(=100-20)	RVC상 원산지 포함비율로 계산 가능한 가치: 60(=20+40)

주: 비원산지 중간재의 공장도가격을 100으로 하고, 기초 비원산지 투입재 40, 원산지재료 20 및 제2가.7조나호에 따라 인정 가능한 당사국 가공가치 40으로 구성된 경우를 단순화한 예시이다. 현행 협정과 개선협정은 가치산정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위 수치는 동일한 RVC 산식에 따른 직접 비교가 아니라 비원산지 중간재에 내재된 가치의 처리방식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2가.7조나호에 따라 가공가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재료 자체가 원산지재료로 전환되거나 세번변경기준·특정공정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3.3 누적규정의 재편: 재료누적과 완전누적

누적은 협정 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공정·부가가치 등을 최종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자국의 원산지재료로 인정하는 재료누적과 달리, 완전누적은 원산지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재료에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과 발생한 부가가치까지 최종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료누적에 공정누적과 부가가치의 누적이 더해진 개념이다.

11)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7조나호. 비원산지재료가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가치와 그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RVC의 원산지 포함비율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한-영 FTA는 한국과 영국 간 재료누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EU까지 포함하는 누적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당사국 또는 EU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누적이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 아래 EU에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도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인정한다.¹²⁾

개선협정 제2가.12조제2항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재료로 보는 재료누적을 규정한다. 제3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비원산지재료에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이 그 재료 자체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종상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해당 생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공정과 부가가치까지 연결하여 인정하는 완전누적에 해당하는 구조이다.¹³⁾

재료누적에서는 상대국에서 공급되는 재료가 먼저 원산지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지만, 완전누적에서는 그 단계에서 비원산지 상태에 머물더라도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후속 생산과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정 A를 수행한 재료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영국의 공정 B와 함께 최종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다. RVC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의 누적은 앞서 살펴본 제2가.7조의 가치산정 규정과 연계된다. 다만 최종상품은 제2가.2조와 해당 PSR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표 3〉 현행 한-영 FTA와 개선협정의 누적규정 비교

구분	현행 한-영 FTA	개선협정
한·영 원산지재료	재료누적 인정	재료누적 유지
한·영에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공정·부가가치	명시적 규정 없음	완전누적 도입
EU 원산지재료·공정	재료·공정누적 가능	지정 섬유품목에 대한 특례로 한정

자료: 현행 한-영 FTA 제3조,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12조 및 부속서 2가-가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EU 누적의 범위는 반대로 축소된다. 2025년 10월 교환각서에 따라 현행 제3조의 EU 누적은 2027년 7월 1일 또는 개선협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12)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3조제1항·제2항. 다른 당사국 또는 EU 원산지재료의 누적과, 일정 요건 아래 EU에서 수행된 작업·가공의 누적을 규정한다.

13)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12조제2항·제3항. 제2항은 한·영 간 원산지 상품·재료의 재료누적을, 제3항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생산을 후속 생산과 연결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빠른 날에 적용이 중단된다. 개선협정에서는 일반적인 EU 누적을 제2가.12조에 두지 않는 대신, 부속서 2가-가 제11부 주 1에 지정된 섬유품목에 대해서는 EU 원산지 상품·재료와 EU에서 이루어진 가공을 인정하는 특례를 유지한다.¹⁴⁾

3.4 재생재료 및 재제조 상품의 원산지 취급

현행 협정도 사용 후 물품과 폐기물·부스러기를 원산지 판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로 원재료 회수와 연결된 완전생산 규정의 형태를 취한다. 개선협정은 이와 별도로 재생재료와 재제조 상품을 정의하고 제2가.11조에서 재생재료의 원산지 취급을 규정한다.

제2가.1조에서 재생재료는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한 후 세척·검사·시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공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한 재료를 말한다. 재제조 상품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이러한 재생재료로 구성되고, 동등한 신상품과 비교하여 유사한 성능과 보증을 갖춘 상품이다. 따라서 원재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부스러기와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생재료는 구별된다.

제2가.11조는 재생재료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그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이를 원산지재료로 취급한다. 그러나 최종 재제조 상품은 제2가.2조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제조 상품에 결합되지 않은 재생재료는 그 자체가 제2가.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원산지재료로 인정된다.¹⁵⁾

이러한 특례는 최종상품의 PSR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원산지재료로 취급되는 재생재료가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세번변경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RVC법에서는 공제법의 비원산지재료가치 또는 집적법·원산지재료법의 원산지재료가치에 반영된다. 따라서 재생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제조 상품이 원산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재료 특례를 반영한 후 최종상품의 PSR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1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25.10.24.), 영국 측 제안각서, 2쪽(현행 제3조의 EU 누적은 2027.7.1. 또는 개선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중단). 관세청은 동 개정이 2025.12.18. 발효되어 EU 누적 예외가 위 시점까지 연장되었다고 안내하였다(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2025.12.20.). 개선협정 공개본 부속서 2가-가 제11부 주 1은 제5111호·제5112호·제5515호·제5602호 등 열거된 섬유제품에 한하여 EU 원산지 상품·재료와 EU에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된 가공의 누적을 인정한다.

15)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4조제1항자호·차호(원재료 회수용 중고품 및 생산·가공 과정의 폐기물·부스러기);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1조(재생재료 및 재제조 상품의 정의) 및 제2가.11조(재생 및 재제조 상품).



이에 따라 사용 후 부품을 활용하는 재제조 산업에서는 재생재료의 원산지 취급이 최종 재제조 상품의 세번변경기준이나 RVC 기준 충족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3.5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상품까지 포괄하는 재고관리기법으로 확대

현행 한-영 FTA 제11조는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별도의 재고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면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대상은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개선협정 제2가.14조는 적용대상을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로 확대한다. 제2가.1조상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는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이들의 원산지는 각각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혼합된 경우 생산이 수행되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¹⁶⁾

이에 따라 생산에 투입되는 대체가능한 원재료·부품뿐 아니라 원산지가 서로 다른 대체가능 상품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재고관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16)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11조(재료의 구분 회계);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1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의 정의) 및 제2가.14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개선협정은 적용대상을 상품까지 넓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규정한다.

다만 회계적인 방법으로 실제 원산지 수량을 초과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 선택한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인의 회계연도 동안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는 수량은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원산지 지위를 받을 수 있었던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은 동일한 품명이나 HS번호만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상품 또는 재료가 상업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대체가능성 요건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3.6 직접 운송에서 비조작으로: 비당사국 물류 허브 활용 범위 확대

현행 한-영 FTA 제13조는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하되, EU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제품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 밖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탁송화물을 전제로 환적 또는 일시적인 창고보관을 허용한다. 이 경우 제품은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외의 작업을 거쳐서는 안 된다.¹⁷⁾

EU 경유 특례는 2025년 10월 교환각서에 따라 2027년 7월 1일 또는 개선협정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개선협정 발효 전에도 EU 경유화물에는 그 밖의 비당사국 경유와 구별되는 완화된 직접 운송 규율이 적용된다.¹⁸⁾

개선협정 제2가.20조는 이러한 직접 운송 규율을 비조작 규정으로 재편한다.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거나 그곳에 보관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추가 생산 또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해당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으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허용되는 범위에는 하역·재선적 외에도 분리·보관, 필요한 표시 또는 라벨링,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포함된다.¹⁹⁾

17) 현행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제2항.

18)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25.10.24.), 영국 측 제안각서, 2쪽. 동 각서는 현행 제13조제1항의 “또는 EU를 경유하여” 문구를 2027.7.1. 또는 개선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관세청은 동 개정이 2025.12.18. 발효되어 EU 직접운송 예외가 위 시점까지 연장되었다고 안내하였다(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2025.12.20.).

19) 개선협정 공개본 제2가.20조(비조작). 비당사국 경유·보관 시 허용작업, 비당사국 관세 당국의 통제 및 수입 관세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운송·상업서류 등의 입증수단을 규정한다.

이에 따른 효과는 물류경로별로 다르다. EU 경유는 현행 협정에서도 이미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EU 외 비당사국 경유에서는 현행의 단일 탁송화물 요건이 개선협정에 반영되지 않아 허용되는 물류활동의 범위도 넓어진다.

입증자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된다. 개선협정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 상업송장, 재무기록, 비조작 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협정에도 환적·보관 상황에 관한 증거와 운송서류 등의 입증수단이 존재하나, 개선협정은 비조작 여부와 관세 당국의 통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특히 EU 외 비당사국의 물류허브에서는 환적·보관·화물 분리 등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므로, 기업은 해당 물류과정이 비조작 및 관세 당국의 통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한-영 FTA 개선협정은 원산지 규정 체계를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로 재편하고,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 가치산정, 생산단계 간 연계, 재료의 취급, 재고관리 및 비당사국 물류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폭넓게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원산지 판정에서는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와 함께 자사의 생산·조달·물류구조에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상품의 원산지 취득 여부는 이러한 일반 원산지 규정과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화장품 및 가공식품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검증 절차를 살펴보고, 개선협정의 기업 활용과 관련된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글로벌공급망 규제 환경의 변화 - 미국 동향 중심으로



배효진
Kim&Chang
외국변호사

1. 들어가며: 공급망 규제 환경의 변화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책임에 대한 요구는 2011년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채택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에서 각국의 구체적인 법제로 전환되어 왔다. 그 규제화 흐름은 대체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 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이다.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은 법 적용 대상 기업들에게 공급망 내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공시 중심 접근은 2015년 영국 현대노예법(UK Modern Slavery Act), 2018년 호주 현대노예법(Australia Modern Slavery Act), 그리고 2024년 발효된 캐나다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공시만으로는 강제노동 근절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 자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이다. 2022년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2027년부터 시행될 EU의 강제노동 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 EU 2024/3015)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는 기업에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이다. 2017년 프랑스의 기업 실사 의무법(Loi de vigilance), 2023년 시행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그리고 2029년부터 시행될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권을 근거로 한 공급망 규제 강화가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약 100년 전 제정된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호무역주의이다.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으로 생산되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자국 산업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려는 흐름이다. 이러한 기조는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미국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명문화되었으며, 현재 관세를 보호무역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가 강화되자, 그러한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리스크가 옮겨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Uyghur Human Rights Project, UHRP)는 202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UFLPA 시행 이후 대미 고위험 품목 수입은 뚜렷이 위축된 반면 이렇다 할 수입 규제가 없는 호주·일본으로의 동일 품목 수입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노동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느슨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덤핑시장이 될 것을 우려하여, 영국과 호주에서도 자국의 강제노동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독립적 현대노예제 감독관(Independent Anti-Slavery Commissioner)이 2025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매년 약 200억 파운드 규모의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영국에 수입되고 있으며 교역 상대국들이 국경에서 이를 차단하기 시작함에 따라 영국이 그 덤핑처가 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시 중심의 현행 현대노예법을 넘어 의무적 인권 실사와 수입·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입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에서도 현행 현대 노예법이 공시에 그칠 뿐 수입 금지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종합하면,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는 미국·EU를 넘어 영국·호주 등으로도 국경 단계의 집행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관련 규제 강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동향

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사

미국의 가장 최근 동향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교역 상대 경제권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부재 또는 그 효과적 집행을 부재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2026년 3월 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 교역 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USTR은 이 조사의 근거로 무역법 301조(b)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것으로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제약을 주는 행위’ 조항을 원용하였으며,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지속적 행태를 불합리 사유로 규정하였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EU, 영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호주, 브라질 등 미국의 60대 교역 상대 경제권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2026년 6월 2일 공개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USTR은 조사 대상 60개국 모두가 강제노동 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 54개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고, 캐나다, EU, 멕시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은 수입 금지 제도는 도입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6년 7월 USTR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한 교역 상대 경제권에는 10%, 그 외 국가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상호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의 도입을 약속받고 있다.

나. CBP의 집행 강화: UFLPA와 관세법 307조

미국은 조사·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정책 수단과 함께, 개별 화물 단위의 국경 집행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집행 강화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6월 12일, 강제노동 관련 집행 지침을 통합한 새로운 가이드선스(Forced Labor Enforcement 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를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선은 관세법 307조에 근거한 유보 해제 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 및 조사 판정(Finding),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그리고 미국의 적대세력 제재 대응법(CAATSA)이라는 세 가지 강제노동 집행 근거 법령의 운영 절차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억류·배제·몰수 절차, 대응 기한, 필요 증빙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 가이드선은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가 단순한 리스크 저감 수단을 넘어 수입자의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 의무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UFLPA

UFLPA는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채굴·생산·제조된 물품, 또는 UFLPA 기업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하여 수입을 금지한다.

흔히 '신장 강제노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본사나 1차 협력사가 신장 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UFLPA의 리스크는 원자재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이 중국 밖에 위치하더라도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억류 화물의 원산지 국가별 순위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다음 순위에 위치한다. 업종별로도 전자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항공우주, 의류·섬유, 산업·제조 자재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이 집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 UFLPA 시행 이후 고위험 품목군은 매년 확대되어 왔다. 2022년 최초 발표 당시에는 의류, 면화 및 면제품, 실리카 기반 제품(폴리실리콘 포함), 토마토 및 그 가공품이 지정되었다. 2024년에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 수산물에 추가되었고, 2025년 8월에는 가성소다, 홍대추, 구리, 리튬, 철강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들 신규 고위험 품목은 대부분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소재 품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¹⁾

고위험 품목 지정 과정에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조사보고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DHS는 매년 발간하는 UFLPA 전략 보고서에서 향후 고위험 품목 지정 기준으로 복수 기업의 강제노동 관련 신뢰할 만한 증거의 존재,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산업 여부, 해당 품목의 신장 지역 생산 비중(중국 전체 생산량의 15% 이상 여부) 등을 제시한 바 있다.²⁾

UFLPA 기업 목록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37개 기업이 추가되어 총 144개 기업이 등재되었으며, 2026년 7월에는 43개 기업이 한꺼번에 추가되어 총 187개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단일 확대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알루미늄, 의류, 구리, 면화, 토마토 및 그 가공품 등 다양한 고위험 업종의 기업이 포함되었다.

2) 관세법 제307조(WRO)

UFLPA가 미국의 유일한 강제노동 수입 규제 수단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관세법 307조에 근거한 WRO 역시 지속적으로 발동되고 있다. 관세법 307조는 1930년 제정된 이래 강제노동·수형자노동·계약노동으로 전체 또는 일부가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CBP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하여 WRO를 발동한다.

최근 사례로는 2026년 6월 16일 CBP가 세르비아 소재 중국계 기업인 Serbia Zijin Copper D.O.O.가 생산한 구리 및 구리 제품에 대해 발동한 WRO를 들 수 있다. CBP는 근로자 진술, 사진, 포커스 그룹 현장 기록, NGO 보고서, 언론 및 학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취약성 남용, 임금 체불, 협박·위협, 이동 제한, 신분 증명서 압류, 초과 근무 강요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강제노동 지표 중 6가지에 해당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는 증거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une 17, 2022); 2024 Updates; 2025 Updates

2) 2025 Updates, page 12

이 사건은 2026 회계연도 들어 CBP가 발동한 네 번째 WRO이자, 세르비아에 소재한 중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WRO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기업의 모회사인 Zijin Mining은 이미 2025년 1월 UFLPA 기업 목록에 등재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와 별개의 사업장·별개의 법적 근거(관세법 307조)에 기초한 것으로, 강제노동 리스크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단위로 추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맺음말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관련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자사의 주요 수출·판매 시장에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가 존재하는지, 해당 규제상 고위험 집행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사의 주력 제품이 그 집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둘째,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사의 공급망이 실제로 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즉 공급망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크 노출이 확인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망 매핑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 공백에 대해서는 1차 협력사는 물론 그 이하 단계의 협력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CBP의 가이드스 등 집행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강제노동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기관, 고객, 투자자의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 CBAM 검증, 무엇이 준비되었고 무엇이 남았나



이경용
(주)한국경영인증원
탄소중립검증센터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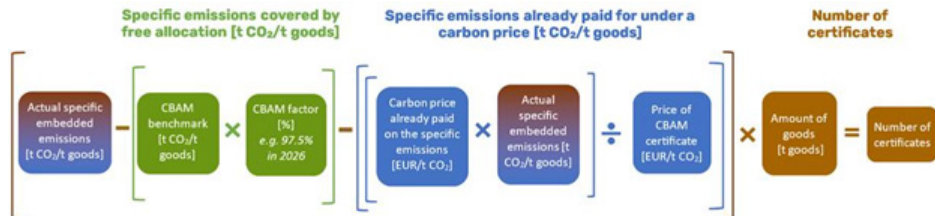
1. 보고서의 숫자가 “비용”이 되는 시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간을 마치고 2026년 1월 확정기간에 진입했다.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의 차이는 단순한 시점의 차이가 아니다. 전환기간에는 수입자가 분기별로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었고 검증도 의무가 아니었다. 확정기간에는 그 숫자가 EU 수입자(인가된 신고인)가 실제로 구매하고 반납해야 하는 CBAM 인증서의 수량, 즉 금전적 부담을 직접 결정한다.

여기서 검증(verification)이 등장한다. CBAM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두 갈래 선택지를 준다. 하나는 EU가 정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산정한 배출량(실제값)을 쓰는 것이다. 기본값에는 “Mark-up”이 붙기 때문에 친환경 혹은 배출 효율이 좋은 기업일수록 실제값을 쓰는 편이 유리하다. 그런데 실제값을

쓰려면 반드시 EU 회원국 인정기구(NAB)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결국 검증은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자기 실적을 인정받아 CBAM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그림 1] CBAM 의무(인증서 수량) 산정식— 실제값을 사용하는 단순재의 경우



출처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No. 1 – Introduction to CBAM concepts」(2026. 8. 14.), Figure 2-1

[그림1]이 CBAM 의무를 계산하는 기본 구조다. 제품의 실제 특정 내재배출량에서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몫(CBAM 벤치마크 × CBAM factor)을 빼고, 여기에서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몫을 다시 차감한 뒤, 수입 물량을 곱하면 반납해야 할 인증서 수량이 나온다. 식 자체는 명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가 적지 않다. 특히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어떤 증빙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이다. CBAM factor 역시 연도별로 달라진다. 결국 기업도 검증기관도 관련 법령과 가이드언스의 개정을 계속 추적하면서 학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2. CBAM 법령·가이드언스 업데이트 현황

CBAM은 기본규정 하나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본규정(EU) 2023/956을 정점으로 이행규정(IR)과 위임규정(DR)이 층층이 붙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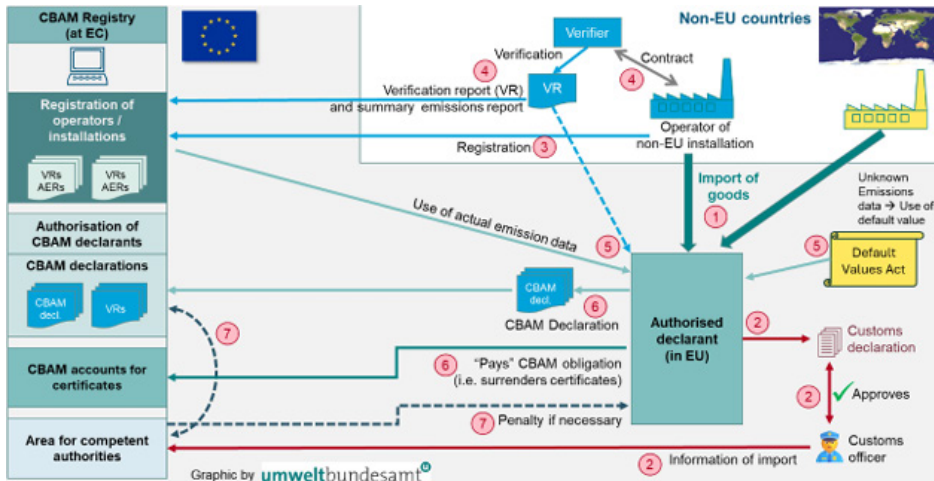
큰 흐름은 이렇다. 전환기간은 IR 2023/1773이 규율했고, 확정기간의 실체는 2025년 12월에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다. 산정 쪽 규범은 앞서 나와 있었지만, 이 시기에 모니터링·보고(IR 2025/2546)와 내재배출량 산정(IR 2025/2547)이 정리되었고, 여기에 CBAM 인증서 가격(IR 2025/2548), 무상할당 조정(IR 2025/2620), 기본값(IR 2025/2621)이 함께 공개되었다. 검증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검증기관 인정을 규율하는

위임규정 DR 2025/2551이다. 즉 2025년 12월은 ‘산정’ 위주였던 규범 체계에 ‘검증’의 뼈대가 더해진 시점이었다.

그리고 2026년 8월, 실무 지침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8월 14일에는 역외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선 10종이 공개되었다. CBAM 개념을 소개하는 1번 문서부터 산정 방법(3번), 무상할당 조정 계산(4번), 그리고 시멘트·수소·비료·철강·알루미늄·전력의 섹터별 가이드선(5a~5f)까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 8월 24일에는 검증기관과 인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Guidance on CBAM Verification and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National Accreditation Bodies」가 공개되었다.

이 규범들이 실제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동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면 [그림 2]와 같다. 역외 사업장의 사업자는 검증기관과 계약해 검증보고서를 받고, 그 결과를 CBAM 등록부(Registry)를 통해 EU의 인가된 신고인에게 전달한다. 신고인은 이를 근거로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반납하며, 세관과 관할당국이 그 이행을 확인한다. 검증기관은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위치에 있다.

[그림 2] 확정기간 CBAM 거버넌스—주체별 역할과 데이터 흐름



출처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No. 1 – Introduction to CBAM concepts」(2026. 8. 14.), Figure 2-2

정리하면 이렇다. 2027년 9월 30일까지 2026년 실적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그 결과가 등록부를 거쳐 신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문서가 불과 이번 달에도 갱신되었다. 기업도 검증기관도 ‘확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3. CBAM 검증 동향: 아직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CBAM 검증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규정은 EU 회원국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만이 CBAM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기구란 시험기관·검증기관 등의 적격성을 심사해 지정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인정기구(KOLAS)〈시험·교정·검사〉, 국립환경과학원(NIER)〈검증〉, 한국인정평가원(KAB)〈경영시스템〉에 해당한다. EU는 회원국별로 인정기구를 1개만 두도록 하고 있다.

’26년 7월 24일 “State-of-play CBAM Accreditation” 문서를 보면 우리 검증기관에 결정적인 제약이 드러난다. CBAM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인정기구는 24개이지만, 실제로 신청을 접수할 준비가 된 곳은 13개다. 그리고 제3국 신청자를 인정하기로 한 기관은 프랑스(COFRAC)·그리스(ESYD)·이탈리아(Accredia)·네덜란드(RvA)·폴란드(PCA)·슬로바키아(SNAS)·스웨덴(Swedac) 등 7개이며, 이 가운데 이미 제3국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기관은 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스웨덴 4개뿐이다. 프랑스는 8월, 슬로바키아는 10월, 슬로베니아는 11월 등 접수 개시 시점을 예고한 기관이 있어 숫자는 계속 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검증기관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검증기관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럽 인정기구에 직접 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관이 검증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도 진다. 검증보고서와 의견서에 국내 검증기관의 이름이 기재되며,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내부 문서의 영문화와 인정 취득 비용 부담이 크다. 둘째, 아웃소싱 방식이다. 유럽 검증기관과 계약하여 현장 방문 등 검증의 일부를 국내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구조로, 진입은 빠르지만 기업 정보가 유럽 검증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고 검증보고서에는 유럽 검증기관의 이름이 찍힌다.

〈표 1〉 국내 검증기관의 두 가지 접근 방식 비교

구분	① 유럽 인정기구 직접 인정	② 유럽 검증기관과의 아웃소싱
검증 수행 주체	국내 검증기관	유럽 검증기관 (일부 업무를 국내 기관이 수행)
검증보고서상 명의	국내 검증기관	유럽 검증기관
책임 귀속	국내 검증기관이 전적으로 부담	유럽 검증기관
주요 부담	내부 문서 영문화, 인정 비용·기간	역량 축적의 한계, 정보 보안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국내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검증기관이면 유럽에서도 바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증 시스템 자체는 ISO 17029, ISO 14065 등 국제표준을 따르므로 큰 틀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핵심은 표준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EU CBAM에 대한’ 적격성과 공평성이 관리·운영되고 있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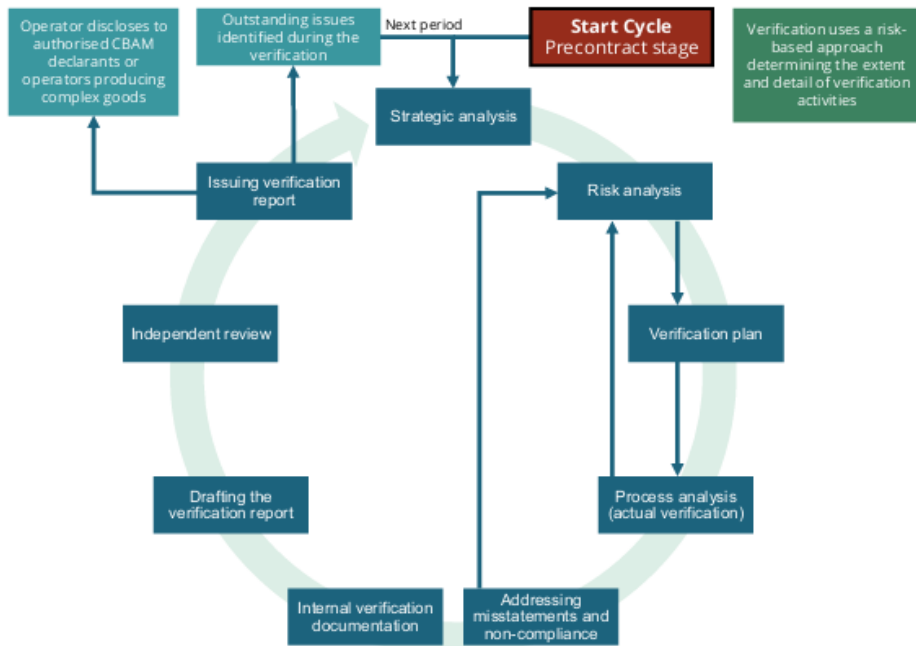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K-ETS(한국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우수한 심사원과 검증기관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CBAM은 K-ETS와 완전히 같지 않다. 우선 검증 수행과 보고서 작성을 영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산정의 단위다. K-ETS와 EU-ETS는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 총량을 산정하지만, CBAM은 이를 제품(재화) 단위로 귀속시킨다. 사업장 총량 산정에 익숙한 심사원이 생산공정을 정의하고 전구물질·열·전력의 흐름을 개별 재화에 배분하는 데까지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EU-ETS 검증 경험이 있는 유럽 검증기관조차 CBAM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scope) 확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검증기관이 마주한 현실

검증 절차 자체는 낯설지 않다. 8월 24일 가이드스가 제시하는 검증 절차 [그림 3]은 계약 전 단계에서 시작해 전략적 분석,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검증계획 수립, 공정 분석(실제 검증), 부적합·오류 처리, 내부검증문서 작성, 검증보고서 작성, 독립적 검토, 검증보고서 발행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다. K-ETS 역시 리스크 기반의 검증 계획 수립, 현장 확인, 독립적 검토로 이어지는 구조가 유사해, 국내 검증기관에도 절차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익숙한 절차를 낯선 조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첫째, MP(모니터링 계획서) 평가의 책임이 온전히 검증기관에 있다. K-ETS에서는 검증을 받은 모니터링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EU-ETS에서는 회원국 관할당국(CA)이 승인(approve)한다. 규제당국이 계획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구조이므로, 검증기관은 그 승인된 계획을 기준으로 데이터 및 결과를 검증하면 된다. 그런데 CBAM에는 그러한 승인 절차가 없다. 법령과 가이드스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서를 평가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승인해 줄 주체를 두지 않았다. 결국 모니터링 계획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일부터 검증기관의 책임 영역에 들어온다. 모니터링 계획서에 중대한

[그림 3] CBAM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 절차



출처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on CBAM Verification and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National Accreditation Bodies」(2026. 8. 24.) 수록

이탈이 있으면 검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검증의 성패는 이 단계에서 갈린다.

둘째, 재화 단위 산정이라는 차이다. K-ETS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CBAM은 제품(재화) 단위로 배출량을 귀속시켜야 한다. CBAM의 시스템 경계는 제품 탄소발자국(PCF)과도, 사업장 단위의 배출권거래제와도 다르다. 원료 채굴과 운송 등 상류 공정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복합재의 전구물질 생산은 포함되고, 사용 단계와 폐기 단계는 제외된다. 검증기관은 이 경계를 정확히 적용했는지, 전구물질·열·전력이 공정 사이를 오가는 흐름을 빠짐없이 반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전구물질은 다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검증기관이 해당 시점에 유효한 인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 범위를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사례가 없다. 첫 검증 주기이므로 참고할 선례도, 축적된 모범사례도 없다. 여기에 8월 24일에도 새 가이드스가 올라오는 상황이 겹친다. 기준이 움직이는 동안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검증기관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5. 지금 해야하는 것 : 기업의 검증체계 구축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과 검증기관 모두 EU CBAM에 부합하는 산정·검증체계를 2026년 내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CBAM 적용 제품의 전 배출스트림 — 생산공정의 직접 배출부터 전구물질, 공정 간을 오가는 열·전력의 흐름까지 — 에 대한 배출량을 누락 없이 검증받고, 확정기간 첫 주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준비를 마친 뒤 상대를 부르는 방식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

일정을 역산해 보면 남은 여유가 많지 않다. 2026년 실적에 대한 CBAM 신고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그러나 이 날짜만 보고 준비하면 늦는다. 복합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검증에 앞서 전구물질에 대한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그 데이터에 의존하는 후속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연쇄를 감안할 때 전구물질에 대한 검증 배출량이 늦어도 2027년 2~3월에는 확정되어야 하며, 다시 여기서 역산하면 2026년 10월부터는 모니터링 계획서(MP)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착수해 연내 완료해 두어야 2027년 상반기의 본검증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이 유의할 점은, CBAM의 모니터링 계획서가 K-ETS의 모니터링 계획과 양식·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것이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재화 단위 산정, 생산공정 정의, 전구물질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어 기존 K-ETS 서식을 그대로 옮겨서는 부합하기 어렵다. 상당수 기업이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기업 준비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작성	CBAM 방법론 규정 요구사항에 맞춰 작성
전구물질 공급망 정비	공급사로부터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영문 대응 체계	보고서 영문으로 작성

〈표 3〉 검증기관 준비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인정 취득	제3국 신청을 받는 인정기구 중 목표 기관을 정하고, 인정 범위 (활동군, 간접배출·전력 포함 여부)를 설계한다.
검증 체계 마련	검증 전주기적 체계 마련
심사원 확보	CBAM 검증 가능한 심사원 양성 교육 및 기준 수립

6. 맺음말

CBAM은 지금도 고도화되는 중이다. 8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건의 가이드언스가 새로 나왔고, 제3국 탄소가격 인정 방식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소도 남아 있다. 앞으로 무엇이 추가되고 무엇이 제외될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어느 정도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기한을 맞출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 수출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기업은 와 데이터 체계를 준비하고, 검증기관은 인정과 검증 역량을 확보하며, 정부의 지원까지 삼자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첫 검증 주기의 준비 격차는 그대로 비용 격차로 남을 것이다.

출처 : CBA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